

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10월 13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년 9월 29일

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9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10.1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문화체육과장 김기환)

□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, 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의 ‘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감면규정 대상자를 전부 명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도움이 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시
(안 제14조)

나.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명시
(안 제19조)

다. 기타 사용료 규정 정비 등에 따른 별표 정비(별표 1, 별표 2, 별표 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-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0조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- 5)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- 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- 7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8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5조의4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8. 13. ~ 9. 2.) 결과: 의견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3)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,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법령 전부 명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4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 사용료 반환 개선안을 적용하여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,
- 안 제19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전부 명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함.
- 별표 1, 2, 4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화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,

1) 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: 노쇼(NO SHOW) 억제 및 사용대기자의 기회 제공을 위해 일정 비율의 미반환 제도를 반영

당 초		→	변 경	
구 분	반환금액		구 분	반환금액
	전액 환급 규정 없음	사용일 7일 전 취소	사용료 전액 환급	
사용일 5일 전 취소	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	사용일 6일 전일까지 취소	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	
사용일 4일 전 취소	사용료의 50% 환급	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	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	

- 사용 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- 그리고 보훈대상자 중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6개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를 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·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,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7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23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6·25전쟁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
다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59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74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국군포로"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(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)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(이하 "억류국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- 1의2. "국군포로 유해"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귀환포로"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.
3. "억류지출신 포로가족"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 "억류기간"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.
5. "등록포로"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.
6. "신상정보"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연령·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-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